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경미범죄의 비범죄호	· 방안에 관한 연구 - 🤊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과제 담당관	소속(직급) 사법지	원실(형사지원심의관)	성 명 정재우
연 구 자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책임자: 최준혁)		
연구기간	2023. 12. 15. ~ 2024. 4. 15.		
연 구 금 액	2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 기타 수의계약		
연구결과	 ○ 경미범죄와 비범죄화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리한 후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논의의 의의와 필요성을 명확히 함. 아울러 경미범죄 비범죄화에 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형사조정위원회 등 수사기관에서 경미범죄 비범죄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분석 ○ 경미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외국(독일, 일본, 미국 등)의 규정과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비교법적 관점에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 도출 ○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의 경미범죄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수사 단계, 기소 단계, 법원 단계의 개선방향을 제시 ○ 재판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경미범죄 비범죄화 제도를 포함하여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입법론 포함)을 실체법적, 절차법적 측면에서 검토 		
평가항목	상	중	허-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0		
내용의 완결성	0		
구성, 체제의 적정성	0		
참고문헌의 충실도		0	
학술적, 실무적 가치		0	
제출기간 준수	0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0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0		

평과 결과 총평	 ○ 현재 수사기관의 경우 훈방, 각하, 기소유예 등의 장치를 통해 분쟁의 과도한 형사사건화를 방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원의 경우 기소된 경미범죄 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함으로써 비범죄화 효과를 낼수 있는 별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선고유예제도확대 내지 개선 등 재판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비범죄화수단 또는 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비교법적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짐. 즉 경미범죄 처리절차에 관한 입법/해석론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국(미국, 독일, 일본 등)의 다양한 제도 및 입법례를 상세히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충실한 논의가 진행됨 ○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의 경미범죄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수사 단계, 기소 단계, 법원 단계의 개선방향을 충실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법원 단계의 개선방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구류와 과료를 폐지하고 벌금형의 하한을 20만 원으로 조정하며 가벌성이 낮은 범죄는 과태료로 전환 법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법제화 약식절차 활용 확대(공소기각, 무죄, 면소 등 재판 가능)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부가할 수 있는 조건을 다양화하며, 집행유예취소 외 집행유예 기간 연장, 사회봉사 추가 부과 등의 절차 마련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법원 도입 형사사건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해외 입법례, 해외 실무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실용적이고구체적 타당성 있는 논증 및 결과물을 보여주었음. 다만 기본적으로 문헌연구 방법으로 진행되는 연구 특성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경찰, 검사, 법관 등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음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비공개 사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024. 7. 10.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